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필요한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규정의 정비(안 제8조 ~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안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의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6조, 안 제12조부터 제13조, 안 제15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7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필요한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규정의 정비
(안 제8~10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개인정보보호법」
- 2)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을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하고 같은법 같은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를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 17조 제 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투표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①<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u>법 제5조제1항</u>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u>의하여</u>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는 주민투표권</p>	<p>제1조(목적) ----- 「<u>주민투표법</u>」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 ----- ----- -----.</p> <p>제2조(구의 책무) ①<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주민투표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5조제1항</u>----- ----- ----- -----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 <u>따라</u> ----- ----- <u>사람은</u> -----</p>

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 1. ~ 4. (생략)
-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6. 그 밖에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생년월일, 주소나-----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생년월일-----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
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
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
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
등포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 3. (생략)
-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들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생년월일을-----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1명을 포
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④-----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 (생략)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5조(처리기간)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한다. ---

-----.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범위-----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범위-----
-----.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div>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div>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div>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div>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삭제<2015.12.28>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